■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[별지 제62호서식]

현 행 범 인 인 수 서

제 호

피체포자	성 명	
	주 민 등 록 번 호	
	직 업	
	주 거	
변 호 인		

「형사소송법」 제213조에 따라 0000 피의사건과 관련된 위 피체포자를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인수함

0000.00.00.

○○지방중대범죄수사청

수사관

체 포 한 일 시		
체 포 한 장 소		
체포자	성 명	
	주 민 등 록 번 호	
	주 거	
범 죄 사 실 및 체 포 의 사 유		
인 수 한 일 시		
인 수 한 장 소		
인 치 한 일 시		
인 치 한 장 소		

210㎜ × 297㎜(백상지 80g/㎡)